

【 7 】 양주군가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4. 15.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1996. 1. 23일 양주군가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지사로부터 양주군수가 사업 시행자로 명령을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이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수가 시행한다. (안 제2조)
- 나. 본 사업지구 대상은 양주군 광적면 가남리, 광석리, 석우리 일부지역으로 한다. (안 제3조)
- 다. 본 사업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안 제5조)

라. 토지의 정산금 장수 및 교부금의 평정가격은 지가공및토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개소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양주군가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안 제7조)

마.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행한다.

다만 토지구획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 함에 있어 재정형편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지구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환지 처분할 수 있다. (안 제15조)

바. 토지소유자가 양주군에 거주하지 않아 회의등 권리행사가 곤란한 자는 양주군 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안 제34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가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군가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시행자) 이 사업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수가 시행한다.

제3조 (시행지구 및 대상) 이 사업은 양주군가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칭하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양주군 광적면, 가남리, 광석리, 석우리,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및 택지조성 사업과 기타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5조 (사업기간) 본 사업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으로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부담) ①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종전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급지별 차등을 두어 토지 또는 금전으로 부담케한다.

③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환 지

제7조 (토지및지장물의 가격평정방법) ①토지의 청산금징수 및 교부금의 평정가격은 지가 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 평가기관 2개소이상인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양주군가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군수가 정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가격의 결정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2개이상의 공인감정 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제1항 및 2항의 감정평가는 지구내 토지와 지장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 (환지면적의 기준) 환지교부의 표준으로 할 종전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이하 “지적공부” 라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공고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것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공부상의 지적으로 하되 토지소유시기는 법 제47조 제2항의 공고전일로 한다..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제9조 (환지계획) ①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방법등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48조 내지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로서 교부할 토지는 종전 토지 또는 이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 또는 공공시설용지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군수가 인정할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환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증환지 면적은 제7조에 의한 평정 가격에 의하여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

⑤기존 건물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도로가 계획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½로 감할 수 있다.

⑥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에 증환지된 면적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금전으로 납부한다.

⑦기존 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심하여 현저히 수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율을 ½로 감할 수 있다.

⑧사업지구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하며 토지소유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한다.

⑨환지시에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표준구획을 결정하여 접면장을 일정한 폭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0조 (특별지 환지) ①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 기준면적 이상으로 증환지 할 수 있다.

②종전 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나머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인가 당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기준면적에 미달 하더라도 금전 청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전 건물로서 시행후에 존속되는 기존건물이 환지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과도환지를 지정하여 그 건물부지가 확보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환지에정지 관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 예정지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환지에정지의 사용) 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이 사업 시설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지에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환지에정지의 측량등) ①환지에정지의 권리자 및 관계인에게 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후, 환지에정지에 대한 측량 또는 측량도 교부등 신청이 있을 때에는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양주군 수입증지에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고무인을 날인 판매하여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측량은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군수가 지정한 측지기사로 하여금 측량하게 한다.

제14조 (측량대행) ①군수는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를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케 할 때에는 대행자의 업무 및 책임한계, 대행수수료, 보증금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환지처분) ①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재정형편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지구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환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지구내 공사의 공정이 70%이상 완료되어야 한다.

③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환지처분에 대한 청산) ①환지처분에 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금액과 환지후 평정 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권리금액”이라 함은 권리면적에 종전 위치에서 구획정리사업후 토지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권리면적”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④법 제68조에 의한 정리후 토지평가는 2개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으로 부터 평가를 받은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⑤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 징수는 체비지매각시 감정가에 의한 선청산후 환지처분시증, 감면적에 대한 청산을 한다.

제17조 (납부서 송부)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납부기한을 정한 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 의무자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등기완료의 통지) 군수는 법 제65조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환지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또한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 공 용 지 부 담

제19조 (공공용지의 부담) ①공공용지로 사용할 토지 각 필지별 부담면적은 종전토지면적, 구획정리사업 전후의 평정가격 및 계획도로 폭등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정한다.

②환지 계획시 신설공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계획도로 부담율에 준하여 부담한다.

제20조 (공통부담) ①도로(가각 전체의 토지를 포함) 광장, 공원, 하천, 녹지, 체비지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할 토지로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부담지 이외의 토지는 지구내 토지 각 필지의 면적, 공사비를 감안하여 급지별로 정한다.

②급지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A 급지 인가당시 건물의 부지 및 지목상 대지로 된 토지
- 2. B 급지 1m미만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 3. C 급지 1m 이상 3m 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 4. D 급지 3 " 5 " "
- 5. E 급지 5 " 7 " "
- 6. F 급지 7m 이상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 7. G 급지 도로, 구거, 제방, 하천으로써 개인소유의 토지

제21조 (연도부담) 도로 및 광장의 용지에 제공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 필의 부담으로 한다, 각 토지에서 부담 할 면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한다.

①토지 각 필의 전면도로 부담면적은 별표1에 표시한 부담폭원에 접면장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②1필의 토지로서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전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의 별표 제1호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고 그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을 별표2에 표시한 부담폭원에 접면장을 곱한 면적을 합계면적으로 한다.

③제20조 제2항의 각지 토지로서 별표3호의 표준가로를 갖지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그 접면장에 별표2의 부담폭원을 곱한 수에 별표4의 부담채감율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④배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중 전면도로의 표준세로내에 있는 배면도로의 연도부담은 6분지 1만 부담한다. 다만, 표준세로 이상이 되더라도 사실상 배면도로의 기능만 가질때는 배면도로로 한다.

⑤각지토지의 측면도로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둔각이나 예각일때는 별표 제2호의 부담 폭원에 별표 제5에 의하여 개정한 율을 곱한 부담면적으로 한다.

⑥곡선도로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선이 호를 이룰 경우에는 현을 앞길일로 간주한다.

⑦획지계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예각이 될 경우에는 그 획지계 사변길중 전면도로 표준 속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정점을 정한 다음 그 정점으로부터 전면도로 경계 수선을 내린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에서 예각 각점까지의 길이는 전면부담 길이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변의 길이가 전면도로, 표준세로를 초과하거나 미만일 때는 전면도로 표준 세로 2분의 1의 거리만 전면부담길이에서 제외한다.

⑧광장에 접한 토지에 있어서는 교회도로 폭원이 대등한 경우에는 그 폭원의 도로를 교회도로 폭원이 대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폭원이 큰 도로를 광장에 면한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전면도로로 하고 그 토지에 접한 교회도로를 측면 도로로 간주하여 그 부담면적은 별표1 내지 별표2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부담면적으로 한다.

⑨획지의 표준세로 및 표준가로는 별표3에 의한다.

⑩전면도로와 측면도로와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1 각 도로의 폭원이 다를 때는 폭원이 큰 것을 전면도로로 하고 기타를 측면도로로 한다.

2 도로폭원이 동일할 때는 동서방향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한다.

제 4 장 사 업 비 부 담

제22조 (분담금의 부과대상) 분담금의 부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특히 이익을 받는 당해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23조 (분담금의 부과총액)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공사비, 보상금, 기체이자, 사무비와 기타 필요한 비용의 총액에서 보조금 및 잡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 (분담금의 부과감면) 제23조의 분담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있는 토지 또는 기타 시설물의 정리전과 정리후의 평정가격을 비교한 증차액 또는 정리후 면적 비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할 때
2.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25조 (분담금의 납부시기와 장소) 분담금은 군수가 발행한 납부통지서에 의거 지정하는 장소에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분담금의 징수방법) ①납입고지된 분담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15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독촉장에는 지방세 징수에 의하여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독촉하였는데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차 독촉을 하여야 하며 제2차 독촉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 (분담금의 추징 및 환부) 사업비 수지 청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분담금을 변경하여 환부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추징 또는 환부할 수 있는 금액이 근소하여 군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특 별 회 계

제28조 (특별회계설치)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9조 (세입세출) ①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입금과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각종 시설공사와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환지전문요원과 업무보조원의 급료 및 제경비(위원 및 종사자의 여비)를 세출로 한다.

②세입세출에 부족이 생길 경우 세입이 발생할 때 까지의 기간중 필요로 하는 세출 예산액은 국고 및 지방비의 보조를 받아 조달하되 국고 및 지방비의 보조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집행잔액의 사용) 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후 이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 (결산)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기간중의 손익분석이나 결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법인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 (일반회계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별지 제1호】

환 지 예 정 지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양주군가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부록 호 필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사용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공기타사업에 지장이 있을시 농작물
기타 물건을 지시에 따라 즉각 철거하겠으며 철거에 의한 손해가 있더라도 이의, 보상
요구 또는 이의 신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단위: m²)

종 전 의 토 지				환 지 예 정 지			사 용 면 적	사 용 목 적	소 유 자	
리명	지번	지목	지적	부록번호	부호	면적			주 소	성 명

첨부: 인감증명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사용계획 설계도서 1부

19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양 주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

대 리 인 선 정 신 고 서

양주군가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34조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정 제출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주소 변경 신고서

◦ 환지예정 지정지 : 부록번호 부호 면적 m'

당초	주소
	성명
변경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주소가 변경되었기에 양주군가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35조에 의거 주소변경을 신고합니다.

별첨 : 등기부등본 1통

서 기 19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토지소유권이전신고서

(단위:m²)

리명	지번	지목	지적 매매면적	환지예정지			비고
				부록	부호	면적	

상기 재산은 서기 19 년 월 일 매매하였으므로 양주군가남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35조에 의거 제출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매도인 주소

성명 인

매수인 주소

성명 인

첨부 : 등기부등본 1부

양 주 군 수 귀 하

【별 표 1】

전면도로부지연도부담폭원표

(단위 :m)

전면도로 폭 원	35	30	25	20	15	12	10	8	6	4	3
부담폭원	11.3	10.0	8.7	7.4	6.0	5.0	4.5	4.0	3.0	2.0	1.5

【별 표 2】

측면도로부지연도부담폭원표

(단위 :m)

측면도로 폭 원	35	30	25	20	15	12	10	8	6	4	3
주거지역	2.825	2.500	2.175	1.850	1.500	1.250	1.104	1.000	0.750	0.500	0.4

【별 표 3】

표준세로 및 각지의 표준가로표

(단위 :m)

전면도로 폭 원	35	30	25	20	15	12	10	8	6	4	3
표준세로	28	26	24	22	21	20	19	18	16	13	12
각 지 의 표준가로	28	26	24	22	21	20	19	18	16	13	12

【별 표 4】

표준가로보다 작은 각지의 측면도로부담체감율

(단위 : m,%)

전면도로 폭원 가로	4	6	8	10	12	15	20	25	30	35
9.0	91.1	82.1	76.7	76.7	69.4	69.4	67.3	63.3	59.8	56.7
10.9	97.3	90.2	85.3	85.3	78.2	78.2	76.1	72.0	68.3	64.9
12.7	99.7	95.3	91.6	91.5	85.4	85.4	83.4	79.4	75.7	72.3
13.0	100.0									
14.5		99.0	96.5	96.5	91.2	91.2	88.4	85.6	82.0	78.7
16.0		100.0								
16.4			99.2	99.2	95.4	95.4	93.9	90.7	87.4	84.2
18.0			100.0							
18.2				99.4	98.2	98.2	97.7	94.6	91.7	88.8
19.0				100.0						
20.0					100.0	99.7	99.2	97.6	95.1	92.6
21.0						100.0				
21.8							99.7	99.2	97.6	95.6
22.0							100.0			
23.6								99.7	99.2	97.8
24.0								100.0		
25.5									99.7	99.2
26.0									100.0	
27.3										99.8
28.0										100.0

【별 표 5】

예각시측면도로부담강정율표

예 각	각 도	85	80	75	70	65	60	55	50	45
	율	0.944	0.889	0.833	0.778	0.722	0.677	0.621	0.551	0.500
둔 각	각 도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율	0.973	0.944	0.916	0.889	0.861	0.833	0.805	0.778	0.750

- ③代議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제외한 모든 總會의 權限을 代行한다.
- ④代議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員중에서 總會가 이를 選出한다.
- ⑤代議員의 任期는 4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定款으로 정한다. 다만, 補闕代議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28條 (經費賦課) ①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區劃整理事業에 필요한 費用에 應당하기 위하여 組合員으로부터 經費를 賦課·徵收할 수 있다.

- ②賦課金の 金額은 施行地區 안에 있는 土地의 位置·地目·面積·土質·水利·利用狀況·環境 기타의 事項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公平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③組合은 組合員이 賦課金の 納付를 태만히 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過怠金を 課할 수 있다.

第29條 (徵收의 委囑) ①組合은 賦課金 또는 過怠金を 滯納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市長(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郡守에게 그 徵收를 委囑할 수 있다.

- ②市長 또는 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를 委囑받은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에 組合은 市長 또는 郡守가 徵收한 金額의 100分의 4에 해당하는 金額을 當해市(서울特別市·釜山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郡에 交付하여야 한다.

第30條 (借入金) 組合은 그 區劃整理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第31條 (民法의 準用등) ①第10條第3項·第12條 내지 第15條의 規定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設立의 認可의 경우와 組合이 定款 또는 事業計劃을 變更하거나 區劃整理事業을 中止 또는 廢止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②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 組合設立 組合員의 權利·義務·任員總會 및 代議員會의 運營·組合의 解散 또는 合併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이 法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은 組合에 이를 準用한다.

第4節 地方自治團體등의 施行

第32條 (地方自治團體등의 施行認可)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등이 區劃整理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行

規程 및 事業計劃을 정한 후 그 施行에 관하여 建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規程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80·1·4>

第33條 (供覽) ①地方自治團體등이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申請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書類의 寫本을 14日間 一般에게 供覽시키야 한다.

- ②施行地區안의 土地所有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第1項의 供覽期間내에 당해 地方自治團體등에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다.
- ③地方自治團體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書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申請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削除 <75·12·31>

第34條 (準用)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은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등에 대한 施行認可의 경우와 施行規程 또는 事業計劃을 變更하거나 區劃整理事業을 中止 또는 廢止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5節 國家의 施行

第35條 (施行規程등)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區劃整理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施行規程 및 事業計劃을 정하여야 한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規程은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 ③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④建設部長官이 事業計劃을 變更하거나 區劃整理事業을 中止 또는 廢止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3章 區劃整理事業의 施行

第1節 通則

第36條 (他人의 土地에의 出入등) ①區劃整理事業의 施行者(이하 "施行者"라 한다)나 그 命命 또는 委任을 받은 者는 區劃整理事業의 施行이나 그 準備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道路 또는 假道로 一時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竹木·塙欄·土石等